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2015. 0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가이드라인 협의체 합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참여단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에 참여하였음을 합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영화배급협회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 보상금제도 대상 교육기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이므로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지원기관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 기관이다.

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1) 수업의 주체

- “수업의 주체”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이다.
 -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회나 행정팀의 교직원 등이 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내에 배포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에 제공할 목적을 말한다.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원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구 활동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경우, 평가(시험), 리허설,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다.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방법

(1)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유형

-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외국저작물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부착되거나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 포기 등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하 “공유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이용방법

-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
-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 수 있다.

4.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1)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일부분의 이용’ 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 어문저작물

-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 학술서적이거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 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excerpt of sheet)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performable unit)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하나의 단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 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

-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 (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다.
-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이미지저작물

-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하더라도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5. 보상금 지급

-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4항 단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거나 공유(public domain)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 어문 저작물의 1%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나.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다.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라.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의 저작물
-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용 내역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용내역 제출 양식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포괄방식의 경우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은 제외하지만, 보상금수령단체가 실시하는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 그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